

<h1>보도자료</h1> <p>2022. 3. 28.</p>		<h1>양형위원회</h1>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p>

양형위원회 3/28(월) 제115차 회의 결과

1.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설정 범위 확대** :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하여, ① 아동학대살해, ② 상습범 가중처벌,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처벌, ④ 아동매매, ⑤ 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 추가 설정
- **유형 분류 체계화**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 ‘아동학대’ 범죄군 신설
- **권고 형량범위 상향**

 - 아동학대치사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 → 15년으로 상향**(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
 - 아동학대살해 가중 영역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
- **아동학대 양형인자의 정비**

 - 개별 범죄군별로 **특별가중인자에 상습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 신설된 **아동학대 대유형에서 「처벌불원」만**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일반가중인자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신설
 -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 신설하여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규정 신설하여 적용범위 제한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최종 의결

- **개별 범죄군별 설정**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의 기본 원칙으로 일률적, 획일적 설정이 아닌 범죄군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범죄군별 설정 방식 채택
- **적용 범위** : 벌금형 양형기준은 절차가 특수하고 양형기준 실효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즉결심판, 약식명령 절차에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구공판 사건, 공판절차회부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적용
- **설정 대상** : 벌금형 빈도, 법정형, 범죄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 등 고려, 최초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으로 **교통범죄군**을 선정함
- **권고 형량** :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필요 시 규범적 조정을 가함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3. 28. 15:00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어, 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②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최종 의결함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2. 6. 1. 시행 예정)

[설정 범위]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구성되는데, 그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기존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더하여 추가한 범죄는 다음과 같음
 -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 ②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 ③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중 미설정범죄

[유형 분류]

-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여 그 안에 중유형, 소유형을 둠
 -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할 경우, 위 기본범죄들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 및 유형분류의 수만큼 범죄유형이 파생되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매우 어려움
 -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함

[권고 형량범위]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하여 가중 영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종전 양형기준 중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수정 양형기준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2월 - 3년6월

- 행위 유형이나 아동의 성장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하고,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은 현행 유지
-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들(상해, 교통사고 치사상 등)의 가중 영역 상한이 2년에서 3년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반영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게 됨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죄를 신규 설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적 학대	4월 - 1년 6월	8월 - 2년 6월	2년 - 5년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 6월 - 6년

- 성적 학대: ①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행위 태양도 언어적 학대부터 성적 접촉에 이르는 경우까지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 ② 각 영역의 상한은 **형량 강화 요청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19세 미만)'와 같이 정함**, ③ 가중 영역의 상한(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있는 죄질의 행위 유형(가령, 강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요건(강간죄)으로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아동매매: ① 선고사례 중 범행동기 등을 보면 입양이 대부분이나 영리 목적 알선인 경우도 있는 점, 아동매매 중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목적범인 인신매매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② 비록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으로 성적 학대와 동일하나, 성적 학대와 달리 벌금형이 없으므로 성적 학대의 **형량범위보다 상향하여 설정**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하여 기본 영역 상한, 가중 영역 하한과 상향을 모두 상향(특히, 가중 영역 상한은 **10년 → 15년으로 대폭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종전 양형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수정 양형기준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함**
-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됨**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신규 설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 범위에 의한다.

-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
-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둔**

[양형인자]

○ ‘아동학대’ 양형인자의 주요 특징

[특별감경인자]

-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관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벌불원**」만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 추가

[특별가중인자]

- 행위 태양이 ‘성적 학대’인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 유도
-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 신설

[일반가중인자]

- 일반가중인자로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신설

○ ‘아동학대’ 중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 후 구호 후송’ 양형인자를 감경인자로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 목적 추구

- ‘사체손괴’를 특별가중인자로, ‘사체유기’를 일반가중인자로 정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반영

-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에서 종전 누락되어 있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상습범’ 특별가중인자 추가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주요 내용

[기본 원칙]

- 기본 원칙 설정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수립해 두고, 이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함: 이는 제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 작업뿐만 아니라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임
 - 범죄군 전체에 관한 일률적·통일적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형위원회 설립 후 14년간 이어온 양형기준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징역형 양형기준과 같이 개별적 양형기준을 선택함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벌금형 양형기준은 각 범죄군별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징역형 양형기준을 전제로 그 양형기준에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중 특정 영역에 형종 선택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 개개 범죄군별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징역형 양형기준에서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원칙과 동일하게, 양형 실무의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함
-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함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집행유예 기준 원칙: 양형 실무 축적 후 재논의

-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범의 위험성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종전 징역형 집행유예와 출발점이 다름
- 집행유예는 징역형 중 60% 이상 활용될 만큼 빈번하나, 벌금형에서는 1% 남짓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 자체가 미미함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 즉결심판 사건은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만을 다루어 양형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함
- 약식명령 사건 역시 양형심리와 증거조사가 어려운 절차의 특수성,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적용을 배제함
- 공판절차회부사건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로 종결되는 등 구공판 사건과 절차상 다른 점이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범위에 포함
- 구공판 사건은 공소제기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함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교통범죄에 최초 설정**하고, 점진적 대상 확대
 - 2019년 구약식 전체 498,472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81,554건 (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46,588건(9.35%)으로 매년 벌금형 죄명 빈도 순위 1, 2위를 기록할 만큼 빈번함
 - 벌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 벌금만 다투면서 항소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그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제8기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징역형(금고형)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위 원칙안 정리]

구분	원칙 문구
기본 원칙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원칙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

	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3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

- 일시 : 2022. 5. 2.(월) 오후
- 장소 및 방식: 대법원 회의실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의결